

옴부즈만 운영 규정

제정 2020. 6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옴부즈만”이란 대학이 시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 구성원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옴부즈만의 구성·직무 등

제4조(구성)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으로 구성한다.

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회계학, 법학, 행정학, 경영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
2. 변호사,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
3.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고등교육 분야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

제5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사회적,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심신의 이상 및 자격정지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대학 운영상 필요 때문에 더 이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다만, 이 경우 그 해촉의 효력은 대학이 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해촉의 뜻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.

제6조(옴부즈만 활동 범위) ① 옴부즈만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행정부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
2.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, 가혹행위 등 구성원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
3. 협력 업체, 거래처에 대한 외압행사 등 부적절한 처우
4. 기타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 또는 민원

② 업무 관할에는 제한이 없으나 인종·종교 문제, 성희롱·성폭력, 연구윤리에 관한

사항은 관할하지 않는다.

제7조(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)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직무수행 과정에 발견한 비리비위 관련 사항의 시정 요구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요구
2. 옴부즈만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및 의견표명
3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
4.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.

1. 행정심판, 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
2.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

제8조(제척·회피·기피) ① 옴부즈만은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.

② 옴부즈만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.

③ 사건의 당사자는 옴부즈만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, 제2항, 제3항의 경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3 장 옴부즈만의 직무수행

제9조(직무수행 방법)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총장 및 운영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②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상 총장 또는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여비 등) 옴부즈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료 및 회의, 현장 활동, 출장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수임 금지) 옴부즈만은 대학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비밀엄수)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